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 간담회 결과 -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표준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준수사항 준수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 6] 의거하여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설계 시, 오수 발생량의 20~30% 여유율 반영 필수.
- 폭기조의 안정적인 처리 효율을 위하여 폭기실 2개소 이상 설치 필수.
- 시설용량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시공할 경우 콘크리트 재질로 설치.
-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전처리조 설치.
⇒ 오·우수계획도에 전처리조(용량 등) 표시

【 전처리조 설치 규격 】

처리 시설용량	전처리 시설용량	처리 시설용량	전처리 시설용량
10㎥ 미만	10인용(2.5㎥)이상	30㎥ 이상~35㎥ 미만	60인용(7.0㎥)이상
10㎥ 이상~15㎥ 미만	20인용(3.0㎥)이상	35㎥ 이상~40㎥ 미만	70인용(8.0㎥)이상
15㎥ 이상~20㎥ 미만	30인용(4.0㎥)이상	40㎥ 이상~46㎥ 미만	80인용(9.0㎥)이상
20㎥ 이상~25㎥ 미만	40인용(5.0㎥)이상	45㎥ 이상~50㎥ 미만	90인용(10.0㎥)이상
25㎥ 이상~30㎥ 미만	50인용(6.0㎥)이상		

-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콘크리트 박스 또는 철판 거푸집 설치.
(단, 차량 통행이 불가한 건물 뒤편의 경우 제외 가능)
⇒ 준공검사 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할 수 있음.
-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 사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담당자의 시공 참여 사진 1장 이상 첨부 필수.
- 준공 검사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제 시공한 담당자(실무자)의 참석 필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이후에도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

※ 최종 배수계통도가 표기된 설계도면 첨부. (최초 설계도면과 다를 경우 최종을 반영하여 제출)

현장주소	
개인하수처리 시설 구분	정화조 or 오수처리시설 기입
처리공법	
처리용량 (처리대상 인원)	
시 공 사	(시공업등록증 번호: 제00000-0호)
제 조 사	(제조업등록증 번호: 제00000-0호)

건물 전경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된 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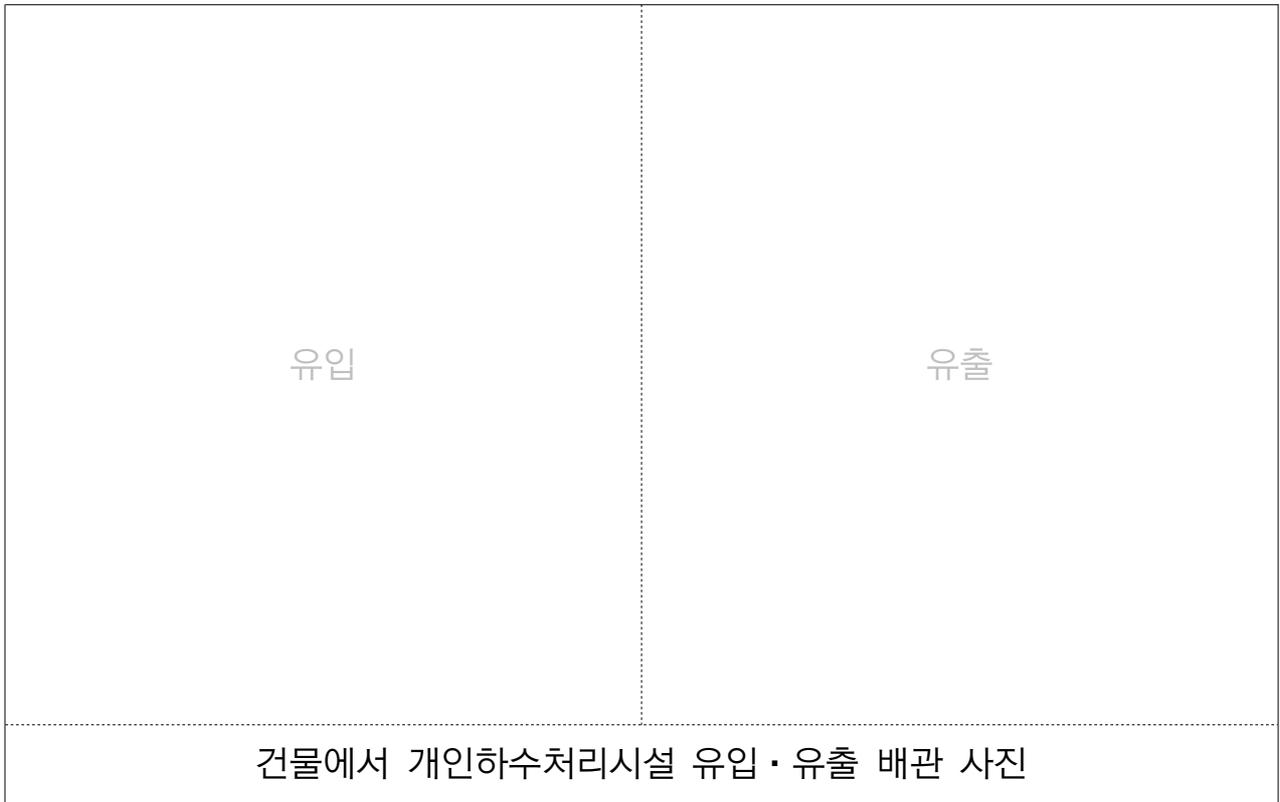
건물 전경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 사진¹⁾ (터파기)

건물 전경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
시공업체 담당자의 시공 참여 사진 1장 이상 필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 사진 (콘크리트로 바닥공사)

1) FRP 재질, 콘크리트 재질로 시설물 제작·설치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터파기, 바닥공사 등(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



2)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개인하수처리시설 위치 주변에 주차블록, 울타리, 철망 등으로 대체 할 수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부 평탄화

폭기조

반송

개인하수처리시설 맨홀부(폭기조 및 반송) 사진

환기구

방충망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기구 및 방충망 사진

최종방류구 사진(하천, 구거, 우수맨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기계실³⁾ 사진

오수처리시설 품질표시기준⁴⁾ 사진

3) 기계로 인한 소음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 없게 보강하여야 하며, 노출 부분 보온재 설치할 것.

4) 품질표시기준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준공 시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및 관리 준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보강링⁵⁾ 사진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망 사진

5)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 전에 보강링 관련 사진 필수로 확인하고 사진 찍을 것.(원형 제작 시 1.5m마다 보강링 성형하여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도색 및 접근주의) 사진 ⁶⁾

6) 시설물의 뚜껑은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하여야 하며, 뚜껑의 상부에는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사진 및 격자형의 철망 등 안전장치 설치하여야 함.